

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-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시·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 등에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- 조례안은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(안 제5조~제6조)이며 스포츠 활성화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. 끝.